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저출산대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정책에 반영하도록 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다. 시장은 저출산대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라. 저출산대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등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결혼, 출산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한 개인,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도록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붙임)
- 비용추계서 1부.(붙임)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 기반 조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결혼·출산 등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저출산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

야 한다.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과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의 저출산대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
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명
2.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3. 관련분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 기타 저출산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3. 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대응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
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결혼지원)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녀 결혼장려 사업

2.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 형성 교육 사업

3.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임산부를 위한 용품·비용 지원

5.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호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련 법령 발췌 사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대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관련 법규 정비 대상	
관련 자료	세부내용 별지

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제2절 고령사회정책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제

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삭제 <2008.2.29.>
-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

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5.23.>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 [전문개정 2008.2.29.]

제24조 삭제 <2008.2.29.>

제25조 삭제 <2008.2.29.>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49호, 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31호, 2015.11.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75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2014.1.1.19.>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12.>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2.>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11.]

제8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1.12.>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8.2.29., 2012.11.12.>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9.3.12., 2010.3.15., 2012.11.12.>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2.1

1.12.>

⑤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12.>

⑥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1.12.>

[제목개정 2012.11.12.]

제9조(운영지원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단을 둔다.

② 운영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운영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임직원·연구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운영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본조신설 2012.11.12.]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6631호, 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기관·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저출산대책 활동 추진을 위하여 시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1조(결혼지원)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남녀 결혼장려사업
 - 2.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 형성 교육 사업
 - 3.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12조(출산등 지원)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 2.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 4. 임신부를 위한 용품·비용 지원
 - 5.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
 -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발생

안 제7조(기관·단체 등 지원), 안 제11조(결혼지원),
안 제12조(출산 등 지원)

○ 보조의 범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 ①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 시비 100%
- ② 저출산 고령사회극복 환경조성사업 :시비100%
- ③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비50% 시비50%
- ④ I-Mom 건강관리 및 출산 선물바구니 지원사업 :시비100%
- ⑤ 모성건강관리 지원 : 국비 72% 시비14% 군구비 14%
- ⑥ 영유아건강관리 지원 : 국비 68% 시비16% 군구비 16%

나. 추계 결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은 2017년 1,5179,624천원이 소요되어
향후 5년간 83,877,010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함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 보조금 및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저출산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지원	35,000	36,750	38,588	40,517	42,543	193,398
	모성 건강관리	8,507,022	8,932,373	9,378,992	9,847,942	10,340,339	47,006,668
	영유아 건강관리	509,940	535,437	562,209	590,319	619,845	2,817,750
	소계	9,051,962	9,504,560	9,979,789	10,478,778	11,002,727	50,017,816
세 출	저출산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지원	50,000	52,500	55,125	57,881	60,775	276,281
	non stop 출산 장려사업지원	230,850	242,393	254,513	267,239	280,601	1,275,596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환경 조성	89,100	93,555	98,233	103,145	108,302	492,335
	I-mom 건강 관리지원사업 및 선물 바구니 지원사업	2,256,500	2,369,325	2,487,791	2,612,181	2,742,790	12,468,587
	모성건강관리	11,813,104	12,403,759	13,023,947	13,675,144	14,358,901	65,274,855
	영유아 건강관리	740,070	777,074	815,928	856,724	899,560	4,089,356
	소계	15,179,624	15,938,606	16,735,537	17,572,314	18,450,929	83,877,010
재원 조달		보조금, 시비,군구비	보조금, 시비,군구비	보조금, 시비,군구비	보조금, 시비,군구비	보조금, 시비,군구비	
국 비		9,051,962	9,504,560	9,979,789	10,478,778	11,002,727	50,017,816
시 비	소 계	6,127,662	6,434,045	6,755,747	7,093,534	7,448,211	33,859,199
	일반회계	6,127,662	6,434,045	6,755,747	7,093,534	7,448,211	33,859,199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3,536,212	3,713,023	3,909,174	4,104,633	4,309,865	19,572,907
민 간							
기 타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최 재 욱